선람	기관의장

익 산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83호 2024년 2월 7일

발 행 자 : 익 산 시 청
발 행 처 : 홍보담당관

조 례

- 익산시 조례 제2488호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 01
- 익산시 조례 제2489호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04
- 익산시 조례 제2490호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07
- 익산시 조례 제2491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익산시 조례 제2492호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14
- 익산시 조례 제2493호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20
- 익산시 조례 제2494호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익산시 조례 제2495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익산시 조례 제2496호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49
- 익산시 조례 제2497호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4
- 익산시 조례 제2498호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57
- 익산시 조례 제2499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 익산시 조례 제2500호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3

규 칙

• 익산시 규칙 제924호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6

공 고

• 익산시 공고 제2024-436호 공인 폐기 공고 ····· 79
• 익산시 공고 제2024-475호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 80

회람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88호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제2조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정

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89호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0호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익산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나. 국내·외 대회의 유치 및 지원

다. 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

라.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전국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1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제6조 관련)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제6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조건)	지 원 내 용	비 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유공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	가)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5. (생략)			
6.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 (공무원 제외) ※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은 한 번만 지급	가)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 50만원 지급 나)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 10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가능
7. (생략)			

구 분	지원대상(조건)	지 원 내 용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2호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2조(「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3조(「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4조(「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5조(「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제6조(「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21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2. (현행과 같음)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2. (현행과 같음)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3.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5. (현행과 같음)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 13. (생 략) <신 설>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13. (현행과 같음) 1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9. (생 략) <신 설> 20.·21. (생 략) ③ (생 략)	제23조(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9. (현행과 같음) 2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1.·22. (현행 제20호 및 제21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3호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제763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제외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가로변건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외관 개선, 마을길 조성 및 폐가 정비 등을 통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익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

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 거리 및 주변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산업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없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산업적·예술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주민 참여)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

제8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제16조 각 호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수립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구조 및 용도변경

9. 제23조제3항에 따른 매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

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지원

제14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의 인력은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경험 및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고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 조성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아닌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사업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원 신청)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공정표 및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원형 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 학술조사 자료 또는 자문에 대한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4. 총사업비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비계획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6조제2호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고증 및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및 점검)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지원 현황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1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원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 청구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중복지원 제한)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건축물 등의 매입)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

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

③ 시장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건 조 물 명 (건 물 대 장)		위 치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 (㎡)
건 물 유 형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건 물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건 축 연 도		건 축 가	
소 유 자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남/여)
소 유 자 주 소		전 화 번 호	
건 축 물 현 황			
건 축 물 특 성			
신 청 사 유 (보 존 가 치)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인)

익 산 시 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정 신청서: 지정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정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명 칭	한글		한자	
	영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보관장소				
소 유 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일자	내용		
지원현황				

(　　) 실　측　도

(　　) 위　치　도

근대건축문화유산명 :		사 진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정번호			지정일시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근대건조물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구 조			최고높이		m
	건립시기					
	건조물연혁					
	금 회 수리내역					
	소요금액	총 수리비용		원		
				원		
				원		
설계자 (건축신고, 건축허가의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비 고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제16조 1항) 2. 건축물·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각 1부. 5. 설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등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별 보조금 지원범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의 확인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지원신청서 접수·등록 불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동의 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지 원 일				
구 분	☐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4호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옥"을 "한옥 및 건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건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제19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옥"을 "한옥 및 건축자산"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민관협의회"란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지정지구 안의 주민 및 주민단체,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관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

	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할 수 있다.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 한옥 및 건축자산----------.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보

	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건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 한옥 및 건축자산----------.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고도육성 정책제안 및 민관협력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삭 제>

2. 고도와 관련된 경관계획 및 주요 정책계획 3. 그 밖에 지정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및 사업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공공영역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장,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대표선임 및 위원의 임기, 민관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5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수당 지급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10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미참전 무공수훈자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10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		12만원
				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		
			사망시	배우자		10만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0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10만원

※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 중 한가지 이상 경합될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12만원)으로 지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④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6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7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6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6만원
			사망시	배우자		6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8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6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6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6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6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8만원
				월남 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 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7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3만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6만원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④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10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10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미참전 무공수훈자		10만원
			사망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10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10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		12만원
				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		
			사망시	배우자		10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10만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10만원

※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 중 한가지 이상 경합 될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12만원)으로 지급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6호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다우리”란 수요자 중심의 보편·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물을 말한다.
2. “익산시 가족센터”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란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익산시 여성회관”이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란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다우리를 설치한다.

② 익산시 다우리의 위치는 익산시 배산로 193-9(모현동2가)로 한다.

제4조(시설)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여성회관
5. 여성단체협의회

6. 그밖의 편의공간 및 익산시 다우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5조(기능 및 사업) ①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 기능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 여성의 문화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사업
5. 지역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사업
6.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익산시 다우리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각 시설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설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익산시 다우리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익산시 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① 익산시 다우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익산시 다우리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에게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익산시 다우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7호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8호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

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등 대규모 개발사업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

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 중규모 개발사업

3.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 소규모 개발사업(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익산시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

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

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에 한해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

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원인자부담금(종전의 시설분담금)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제6호, 제15조, 별표 1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분담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하고, 제4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제1항 관련)

1. 신축 시설

시설 유형별		부과대상 기준	수돗물 사용량 산 식
대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1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7. 그 밖에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중규모 개발사업 (제4조 제1항 제2호)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당 인구수 × 1인1일최대급수량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 ×0.04㎥ / 일
	교육연구 시 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연면적(㎡) ×0.02㎥ / 일
	의료시설	연면적 1,000㎡이상	건축연면적(㎡) ×0.03㎥ / 일
	판매·유통 및 영업시설	연면적 1,000㎡이상	건축연면적(㎡) ×0.025㎥ / 일
	공장건축	연면적 1,500㎡이상	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다만, 검침결과(1년) 계획사용량보다 실사용량이 크면 추가로 부과)
	기타시설	연면적 2,000㎡이상	건축연면적(㎡) ×0.02㎥ / 일
소규모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2. 증·개축 시설

가. 기존 시설물 중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신축 시설] 각호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나. 기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은 제외하고, 증·개축 또는 신축 시설물의 증가된 면적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 시설] 각호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3. 용도변경 시설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나.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한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증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한다.

다. 용도변경 결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이 기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보다 감액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적용하며,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4. 공통사항

가.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나.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1)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2)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세대당 인구수 및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 1인1일 급수량, 첨두계수 등은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준용한다.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계 량 기 구 경 별	원 인 자 부 담 금 (원)
D = 13 m/m	60,000
D = 20 m/m	140,000
D = 25 m/m	240,000
D = 32 m/m	410,000
D = 40 m/m	700,000
D = 50 m/m	1,200,000
D = 75 m/m	2,400,000
D = 100 m/m	4,000,000
D = 150 m/m	9,000,000
D = 200 m/m	14,000,000
D = 250 m/m	30,000,000
D = 300 m/m	60,000,000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frac{a}{10000}$ $\times\sqrt{2\times9.8\times10p}\times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499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의 제목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를 "(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제19조의2"를 "제1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91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 3년---------- 제19조의2제1항----------.

익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조례 제2500호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 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익 산 시 장

2024년 2월 7일

익산시 규칙 제924호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19호"를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호, 제21호"를 "제21호, 제2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7호까지"를 "제17호까지 및 제20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기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마장 시설 사용료·이용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감면 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퍼센트 2. 조례 제23조제2항제17호, 제20호,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퍼센트 ②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으려는 자는 승마장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6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기준) ① ----------. 1. ----------, 제19호 및 제20호---------- 2. ----------, 제21호, 제22호---------- ② ----------. 1. (현행과 같음) 2. ----------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17호까지 및 제20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익산시 공고 제2024-436호

공인 폐기 공고

익산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5.

익 산 시 장

⊙ 공인 폐기 내역

구분	공인명	인 영	규 격 (mm)	교부 사유	폐기일	관수 부서
폐 기	건설교통부소관일반회계전라북도익산시분임수입징수관인		19×19 정사각형	단체 명칭 변경에 따른 폐기	2024.2.5.	도로 관리과
	건설교통부소관일반회계전라북도익산시분임채권관리관인		19×19 정사각형			

익산시 공고 제2024-475호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5항에 의거, 2024년 ~ 2026년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익산시민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6.

익 산 시 장

1. 개최목적

2024 ~ 2026년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가. 일시/장소 : 2024. 2. 22.(목) 14:00 ~ /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

나. 내 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잠정적 의정활동비 결정안 설명 (주재 : 김용균 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잠정적 의정활동비 결정금액 (기존)월 110만원 이내 → (변경)월 150만원 이내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	보조활동비
월 900천원 이내 ⇒ 월 1,200천원 이내	월 200천원 이내 ⇒ 월 300천원 이내

- 잠정적 의정활동비 결정안에 대한 찬반 발표자 발표
- 잠정적 의정활동비 적정성에 대한 방청객 의견청취
- 참석자에 한해 설문조사(잠정적 의정활동비 찬반여부, 의견 작성)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최종 결정

3. 발표자에 관한 사항

가. 발표대상

1. 발표를 신청한 사람(잠정적 의정활동비 결정안 찬성 or 반대)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나.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4.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가. 발표인원 : 4명 내외(찬성 2, 반대 2 내외)

- 의견발표를 원하는 자는 찬반의견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나. 발표시간 : 발표자별 5~7분

(발표 후 5분이 되면 2분 남았음을 사전 안내, 7분이 지나면 마이크 강제 종료)

다. 발표내용 :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 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라. 신청기한 : 2. 6.(화) ~ 2. 20.(화) 18시까지 / 15일간

마. 신청방법 : 발표신청서(붙임1) 제출

- 방 문 : 익산시 기획예산과 기획계(본청 3층)
- 팩 스 : 063-859-5053
- 이메일 : kjko7448@korea.kr

※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한 경우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859-5044)

바. 발표자 선정 및 알림 : 2. 21.(수), 선정대상자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가.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로 되어있어야 함)

나. 제출방법 : 이메일(kjko7448@korea.kr)로 의견서(붙임2) 제출

다. 제출기간 : 2024. 2. 6.(화) ~ 2. 20.(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공청회는 익산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청회 개최를 위한 **최소 인원수는 100명**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참석자가 100명 미만 시, 공청회는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기된 공청회 일시는 공고 예정)

다. 발표자로 선정되신 분은 **2월 22일(목) 오후 12시까지 발표할 원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kjko7448@korea.kr)

라. 발표자는 방청객에게 유인물 및 자료 배포를 금지합니다. 단, 발표 시 본인이 작성한 PPT파일은 사용이 가능하며 **PPT를 사용할 발표자는 2월 22일(목) 오후 12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파일**로, kjko7448@korea.kr로 송부 요망)

마. 참석자에 한해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공청회 날짜 기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인지 확인하기 위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붙임1 **발표신청서**

발 표 신 청 서				
발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잠정적 의정활동비 결정안(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 □ 반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기재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행정절차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발표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출기한 : 2024. 2. 20.(화) 18시 까지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의정활동비 인상 잠정액(월 15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정 □ 비적정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출기한 : 2024. 2. 20.(화) 18시 까지